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연금제도는 가입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및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걸쳐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바, 가입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을 정함에 있어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운용방법을 제시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내용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퇴직연금 정책과 감독 기능의 연계성을 위해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토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안정적 투자를 지향하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운용상품 선택권 보장과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원리금보장상품의 종류에 증권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수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유동화증권을 포함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른 법률에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이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연간 1천800만원(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의 “제14조제1항”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

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5. 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의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30조제1항에 따라 취급하는 예수금.

제25조제1항의 제4호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유동화증권”을 신설하고, 현행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을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기준”을 “기준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마목과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마”목은 “사”목으로 한다..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30조제1항에 따라 취급하는 예수금. 이 경우 증권금융회사는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따른 산업기반신

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유동화증권 제26조제1항제2호 “기준”을 “기준 등”으로 하고, “다음 각목의 기준을 따를 것”을 “다음 각목의 기준 등을 따를 것”으로 하며,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정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운용방법 선정 원칙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내용을 포함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립금을 운용할 것

제37조제1항 후단에 “다만,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급실적을 제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와 가입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게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른 감독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 후단에 “다만,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급실적을 제출하는 의무의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및 업무 이전 명령의 권한은 제외한다.”를 신설한다.

제41조제1항제6호의 “과태료의 부과·징수(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 징수”로 하고, 후단에 “다만,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실적을 제출하는 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권한은 제외한다.”를 신설한다.

제41조제3항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를 한 경우”를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를 한 경우와,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또는 업무 이전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금융감독원장은 제8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 및 근거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 사유)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9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 사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다른 법률에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이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u>
제17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u>연간 1천800만원(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u> 을 말한다.	제17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 ----- --.

제18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①
(생략)

② 가입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
24조제5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
금제도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18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

1.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
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
는 경우.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
회로 한정한다.

3.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개
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5. 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의 중도인출 금액

제25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① 법 제30조 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을 말한다.

1.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운용방법

가. ~ 다. (생략)

<신설>

2. 3. (생략)

<신설>

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제25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① -----

-----.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30조제1항에 따라 취급하는 예수금

2. 3. (현행과 같음)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4. (생략)

② (생략)

제26조(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①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운용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

가. ~ 라. (생략)

<신설>

보증하는 것으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유동화증권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등) ① -----

-----기준 등-----
-----.

1.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30조제1항에 따라 취급하는 예수금. 이 경우 증권금융회사는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

<신 설>

마. (생 략)

2. 기준 :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를 것

가. ~ 나.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3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① 법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말한다.

<단서 신설>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유동화증권

사. (현행 마목과 같음)

2. 기준 등 : 다음 각 목의 기준 등을 따를 것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정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운용 방법 선정원칙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내용을 포함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립금을 운용할 것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① -----

----- 다

만,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급실적을 제출

② (생략)

<신설>

제41조(권한의 위탁·위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위탁한다.

1. ~ 3. (생략)

4.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업무 이전명령(해당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법 제40조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제출 요구를 포함한다) <단서 신설>

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와 가입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른 감독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권한의 위탁·위임)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
다만,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급실적을 제출하는 의무의 위반에 대한

5. (생략)

6.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를 한 경우 그 내용 및 근거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 ⑧ (생략)

<신설>

<신설>

시정명령 및 업무 이전명령의 권한은 제외한다.

5. (현행과 같음)

6. ----- 퇴직연금사업자-----
----- 부과·징수. 다만,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급실적을 제출하는 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권한은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한 경우와,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또는 업무 이전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금융감독원장은 제8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 및 근거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연 락 처	(044) 202 - 7557